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차이 비교

Comparison of the Factors of Recidivism for Probationers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ong-Su Park(goodcop@dreamwiz.com)

요약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재범 | 재범요인 | 범죄예방 | 교정 | 보호관찰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offer an analysis of adult probationers and their recidivism and to suggest a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Various data analysis methods like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determine which of a second offense factors and recidivism included in initial data investigation could effectively explain or forecast reference values.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relations associated with follow-up misconducts of adults under probation, and supposing that those factor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ir second offenses. But it failed to yield so much significant finding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 in a sense that it explored various risk factors and desires of adults under probation according to empirical data, and suggested formulated measures useful in practice to select and categorize appropriate treatments.

■ keyword : | Probation | Recidivism | Second Offenses Factor | Crime Prevention | Correction |

I. 서론

강도, 납치, 살인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범죄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을 준다. 나아가 이는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늙게 만든다고도 한다.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범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른 상습범, 성폭력범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 점차 증가하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재산 범죄나 폭력 범죄 모두에서 상습 전과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범죄자 집단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재범의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국가 형사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며 새로운 효과적인 교정처우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까지 범죄예방의 지배적 모델은 ‘치료모델(treatment model)’이었다. 즉 국가는 범죄행위가 진단되고 치료될 수 있는 개별범죄자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부터 치료모델이 그 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이며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함을 갖는 이론이며, 재범률의 억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자들의 보고가 있는 후에, 개인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범죄대책에서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개별 범죄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흔히 ‘기회감소(opportunity reduction)’, ‘상황적 예방(situation prevention)’ 등의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는데 들게 되는 비용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자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위험관리적 범죄대책은 감시에 의한 범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흐름은 사회적 범죄예방(social crime prevention)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1) 실제 범죄에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이 발병할 위험이 2배, 정신질환을 앓을 위험은 56%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신체활동을 덜 하고 사회활동도 적게 하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낮았고, 결국 신체적으로 9살을 늙게 만든다고 한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_s_read.jsp?news_id=N1000321312)

prevention)으로 나누어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1997년까지의 시기는 교육형주의의 이념 하에 개선·교화 및 사회복귀이념의 실현을 위해 종래의 시설내 처우중심에서 사회내 처우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내처우 중 보호관찰은 21세기 ‘형사정책의 꽃’으로 불린다. 범법자를 구금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선진정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범위험성에 따른 분류를 시행하고 이에 근거한 처우를 제공할 때, 즉 재범 위험성에 강약에 따라 처우수준을 결정하여 집행할 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고, 보호관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다[2]. 이를 위해서는 재범요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는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지침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재범 및 보호관찰 현황

1.1 재범현황

2006년 총 범죄발생 건수는 1,719,075건(인구 10만 명당 3,545건 발생)으로 2005년 범죄발생 건수 1,733,122건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또한 범죄유형별로는 형법범이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특별법범은 4.4% 감소하였다. 검거된 범죄자의 51.5%는 재범자로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가 18.4%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범죄의 재범률은 방화 69.7%, 강도 65.3%, 살인 62.9%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력범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교화·개생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수용이 쉽지 않아 범죄자가 범죄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사회 환경에 새로이 적응치 못하는 것이 재범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3].

1.2 보호관찰현황

전체 실시사건은 2006년 대비 10.3%가 증가한 165,818건으로 보호관찰분야 1.5%와 사회봉사명령분야 17.6%, 수강명령분야 18.2%, 성구매자 교육분야는 39.6%가 증가하였다. 전체 접수사건은 2006년 대비 21.3%가 증가한 115,132건으로 보호관찰분야 13.8%, 사회봉사명령분야 21.0%, 수강명령분야 32.3%, 성구매자 교육분야는 36.6%가 증가하였다.

2007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2006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소년은 1.0%p, 성인은 0.3%p 증가하였다. 소년의 경우 형법 사건·소년법사건·성폭력법사건 등의 재범률이 증가하였고, 성인의 경우 치료감호법사건·성폭력법 사건·선도위탁 사건의 재범률이 감소한 반면 형법 사건·가정폭력법 사건·성매매처벌법사건의 재범률은 증가하였다[4].

2. 재범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재범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성인범죄원인 및 재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성인에 대한 위험성 및 재범 주요 인자를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과 관련된 위험성 요인을 7개분야로 나눠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5].

우선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내용, 가해 및 피해자관계, 전과내용은 재범과 연관을 가질 수 있다.²⁾

다음으로 교육·직업상태는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은 학력, 재학중인 또는 재학했던 학교, 학교생활중 징계(경고, 정학 등) 경험, 폭력경험(가해) 및 피해경험, 학업성취도, 수험능력문제(읽기, 쓰기, 셈하기, 기타 문제 등), 직장생활은 직업안정성(정규직 또는 일용직여부), 직장에서의 이직 및 징계경험, 대인관계(동료 및 상사와의 문제), 전문기술 자격증 소지여부, 자기발전을 위한 직장생활

의 변화계획 유무, 재정상태는 경제적 문제, 동료와 경제문제관계(금전관계), 사회부조 필요성 자각 등은 재범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6].

또한 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직장과 관련하여 성인범에 있어 가정환경과 부모양육의 질, 그리고 학교에서의 적응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원인기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또한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동거가족 중 가족의 수, 결혼상태, 배우자 학력 및 직업, 배우자, 부모 또는 동거가족의 문제(전과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생활주거환경은 월 평균 가구소득, 가구 부채수준, 주거지 형태, 정주정도(빈번한 이사), 거주지역의 환경성(범죄발생 및 교육환경)이 재범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가생활 및 대인(친구, 동료)관계는 조직적 생활에의 결핍(종교 및 친목활동 등), 시간의 활용도(여가의 보람 및 의미성), 범죄경력자와의 교체, 대인관계 대상의 부적설성(나이, 직업, 성격등의 차이), 대인관계상의 문제(부적응, 고립)등이 재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술/약물/도박 문제에 관련하여 우선 음주정도(유무 및 횟수), 약물경험, 도박경험, 음주·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경험, 음주약물 등으로 인한 결혼 및 가족간 문제, 건강문제, 기타문제 등 또한 범죄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7].

육구적 측면에서 가치관과 태도관련해서는 범위반에 대한 호의정도, 관습적 활동에의 가치에 대한 거부감 여부, 법판결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여부, 사회에 대한 시각 등이 재범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인식, 산만성 및 충동성, 대인관계기술의 부적절(눈맞춤 등), 심리적 불안정성, 정신병적 증세(욕설, 지나친 긴장 등), 신경증 세로인한 약물 및 병원치료경험, 죄의식 및 애타심 또한 원인기제가 될 수 있다[8].

3. 재범기준

재범(recidivism)이란 문자 그대로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다시 범죄를 행하는 모든 경우가 다 표면화되거나 담당관서에 입건되어 상

2) 이러한 내용들은 면담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전과내용에서는 최초 입건연령, 최초 입건 죄명, 입건 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형, 기타 그리고 동종전과 유형 및 횟수 등을 대상자에 대한 면접과 각종 사건기록 및 조회기록을 통해 파악하였다.

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암수범죄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9].

많은 재범연구들은 재판에서의 유죄확정을 재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재범연구들에서 재범발생을 관찰하는 기간은 약 5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나 기관이 서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찰, 검찰, 교정기관을 오가면서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10].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이 보호관찰정책을 비롯한 제반 법무행정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법무부에서 발표되는 보호관찰 재범율 자료는 보호관찰 기간 중의 통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11]. 보호관찰 대한 진정한 평가는 보호관찰 종료 이후 그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어느 기간(예컨대 ~3년)내에 범죄발생이 이루어졌는지가 재범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재범은 5년씩이나 관찰기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중단 연구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느냐 아니냐를 관찰하기보다는 제한된 기간이지만 보호관찰 처분 중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느냐 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 재범 판단 기준

가. 재범 판단시기 • 검사가 재입건 된 사건을 종국처분한 때 - 단순히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재범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나. 재범의 인정범위 ① 검사의 종국처분별 기준 • 보호처분자의 경우는 구공판 및 가정보호사건 처리, 소년부 송치 사건을 재범통계에 포함 • 비보호처분자(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기석방자, 가출소자, 가종료자 등)의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만을 재범통계에 포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죄안됨, 공소권없음) 및 구약식 사건(예를 들어 벌금인 경우)은 재범통계에서 제외 • 보호관찰기간 중 입건되었다가, 종료이후 재범에 포함시켜야 할 검사의 종국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통계에 포함 ② 죄명별 기준 • 과실범인 단순 교통사고사범(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죄)은 제외 - 단 교통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범관련업무처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교통사고처리특별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재범통계에 포함
--

현재 우리의 재범이란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내 또는 종료일 이후 재범한 경우를 말하며, 재범 시점 및 구체적인 재범기준은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관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와 같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발생한 재범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지를 일차적인 재범의 준거지표로 설정하였다.

III. 재범유무와 주요변수 비교분석

1. 조사대상과 방법

1.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500여명을 피조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면접설문의 부정확성 및 문항의 누락(147) 등으로 모든 설문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 353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범죄유형별 분포는 표 6과 같으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본 범 내용은 기타를 제외한 폭력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처분의 가장 일반적인 죄목과 일치한다.

표 2. 보호관찰대상자의 죄목 현황

분류	죄명	빈도	퍼센트	누계(빈도)	누계(%)
절도관련범죄	절도	32	9.1	49	13.9
	특수절도	17	4.8		
강도관련범죄	강도	2	.6	16	4.5
	특수강도	8	2.3		
	강도상해치상	8	2.3		
성폭력관련범죄	강간(성폭력)	15	4.2	16	4.5
	특수강간	1	.3		
폭력관련범죄	폭행(폭력)	60	17.0	72	20.4
	가정폭력	12	3.4		
기타	도교법위반	44	12.5	198	56.1
	특가법,사기	50	14.2		
	마약(향정)	39	11.0		
	기타	65	18.4		
	합계	353	100.0	353	100.0

조사대상 성인 보호관찰자의 범죄유형별 분포는 폭력, 절도 순이며, 구체적 죄명으로는 폭행(17.0%), 특가법 및 사기(13.2%), 도로교통법위반관련(12.5%), 절도

(9.1%) 범죄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평균 21.7개월(SD(표준편차) 11.85)이며 사회봉사 120시간(SD 62.52), 수강 41시간(SD 10)으로 나타났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훈련된 면접가 및 보호관찰공무원이 수집된 설문자료와 보호관찰사건부, 보호관찰신고서, 보호관찰카드 기록, 유치 관련서류 등 공식적 기록물을 토대로 해당 케이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자료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자료 분석을 위하여 PC용 SPSS for Window 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 일반적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및 빈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교차분석시에 X² 검증을 살펴보았다. 기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및 각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2. 연구조사 결과

2.1 범죄경력

본 건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죄명에 따른 재범여부는 폭력 및 도로교통법에서 재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범행에 따른 재범 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에서 죄명에 따라 재범 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재범자들 중 죄명별 분포는 절도 13.9%, 강도 5.1%, 성폭력 4.5%, 폭력 20.4%, 도로교통법위반 12.5%, 특가법, 사기 14.2%로 조사되었다.

표 3. 주요죄명과 재범(입건수기준)

죄명		비재범	재범	전체
절도	빈도	23 (46.9%)	26 (53.1%)	49 (100.0%)
	%	13.7%	14.1%	13.9%
강도	빈도	7 (38.9%)	11 (61.1%)	18(100.0%)
	%	4.2%	5.9%	5.1%
성범죄	빈도	10 (62.5%)	6 (37.5%)	16 (100.0%)
	%	6.0%	3.2%	4.5%
폭력	빈도	29 (40.3%)	43 (59.7%)	72 (100.0%)
	%	17.3%	23.2%	20.4%

3) 죄명의 기타분류에서 해당자 분포가 많은 도로교통법위반과 특가법, 사기 항목을 별도로 분류해 교차분석에서 최소기대빈도의 셀을 유지하면서 죄명분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빈도	14 (31.8%)	30 (68.2%)	44 (100.0%)
	%	8.3%	16.2%	12.5%
특가법,사기	빈도	20 (4.0%)	30 (60.0%)	50 (100.0%)
	%	11.9%	16.2%	14.2%
기타	빈도	65 (62.5%)	39 (37.5%)	104 (100.0%)
	%	38.7%	21.1%	29.5%
전체	빈도	168 (47.6%)	185 (52.4%)	353 (100.0%)
	%	100.0%	100.0%	100.0%

(X² 6=18.337, p=.005)

요약하면 본건의 범죄내용과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죄명에 따라 재범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과내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5% 유의수준에서 정역형을 제외한 전과내용과 관계가 있다. 입건횟수,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건수가 있는 경우에 재범률도 높아, 전과관련 경험은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 입건횟수, 기소유예, 집행유예

		비재범	재범	전체
입건횟수(X ² ₃ =152.977 p=.000)	없음	빈도(%) 160(79.6)	41(20.4)	201(100.0)
	1회	빈도(%) 12(29.3)	29(70.7)	41(100.0)
	2회	빈도(%) 7(25.0)	21(75.0)	28(100.0)
	3회	빈도(%) 11(10.2)	97(89.8)	108(100.0)
	전체	빈도(%) 190(50.3)	188(49.7)	378(100.0)
기소유예(X ² ₃ =8.977 p=.030)	없음	빈도(%) 181(52.6)	163(47.4)	344(100.0)
	1회	빈도(%) 5(22.7)	17(77.3)	22(100.0)
	2회	빈도(%) 3(37.5)	5(62.5)	8(100.0)
	3회	빈도(%) 1(25.0)	3(75.0)	4(100.0)
	전체	빈도(%) 190(50.3)	188(49.7)	378(100.0)
집행유예(X ² ₃ =68.814 p=.000)	없음	빈도(%) 141(70.1)	60(29.9)	201(100.0)
	1회	빈도(%) 36(30.0)	84(70.0)	120(100.0)
	2회	빈도(%) 9(21.4)	33(78.6)	42(100.0)
	3회	빈도(%) 4(26.7)	11(73.3)	15(100.0)
	전체	빈도(%) 190(50.3)	188(49.7)	378(100.0)

표 5. 벌금

		비재범	재범	전체
벌금(X ² ₃ =80.551 p=.000)	빈도(%)	160(65.8)	83(34.2)	243(100.0)
	빈도(%)	16(39.0)	25(61.0)	41(100.0)
	빈도(%)	11(35.5)	20(64.5)	31(100.0)
	빈도(%)	3(4.8)	60(95.2)	63(100.0)
	빈도(%)	190(50.3)	188(49.7)	378(100.0)

상습성 지표로 볼 수 있는 동종전과 역시 재범과 관계가 10%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등종전과명 주요 분류 교차표

죄명		비재범	재범	전체
절도	빈도(%)	8(42.1)	11(57.9)	19(100.0)
강도	빈도(%)		3(100.0)	3(100.0)
성범죄	빈도(%)	1(50.0)	1(50.0)	2(100.0)
폭력	빈도(%)	6(12.2)	43(87.8)	49(100.0)
도로교통법위반	빈도(%)	6(13.6)	38(86.4)	44(100.0)
특가법, 사기	빈도(%)	3(37.5)	5(62.5)	8(100.0)
기타	빈도(%)	7(21.9)	25(78.1)	32(100.0)
전체	빈도(%)	31(19.7)	126(80.3)	157(100.0)

(χ^2 6=12.347 p=.055)

2.2 교육과 직업

교육 직업측면에 있어서는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험과 폭력 가해 경험이 재범 가능성과 관계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7. 징계폭력경험

		비재범	재범	전체
징계(χ^2 2=7.407 p=.006)	해당없음	빈도(%) 162(51.9)	150(48.1)	312(100.0)
	해당	빈도(%) 14(30.4)	32(69.6)	46(100.0)
	전체	빈도(%) 176(49.2)	182(50.8)	358(100.0)
폭력(χ^2 1=16.977 p=.000)	해당없음	빈도(%) 165(53.4)	144(46.6)	309(100.0)
	해당	빈도(%) 11(22.0)	39(78.0)	50(100.0)
	전체	빈도(%) 176(49.0)	183(51.0)	359(100.0)

2.3 가정환경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조사에서는 특히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가 재범이 높아 10%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8. 성장과정 중 음주흡연경험 및 가족구성원간 신체적폭력경험

		비재범	재범	전체
신체적폭력 경험(χ^2 1=2.775, p=.096)	없음	빈도(%) 167(50.2)	166(49.8)	333(100.0)
	있음	빈도(%) 7(31.8)	15(68.2)	22(100.0)
	전체	빈도(%) 174(49.0)	181(51.0)	355(100.0)

2.4 사회적 관계

범죄경력자와 어울리는 경우는 재범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과자와 어울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9. 범죄경력자와 교제

		비재범	재범	전체
아니다	빈도(%)	172(51.0)	165(49.0)	337(100.0)
그렇다	빈도(%)	9(34.6)	17(65.4)	26(100.0)
전체	빈도(%)	181(49.9)	182(50.1)	363(100.0)

(χ^2 1=2.604, p=.100)

2.5 술·약물·도박 문제

술, 약물, 도박관련 조사에서 특히 음주가 잦은 경우가 재범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 3-4회 정도의 음주자의 경우 오히려 비재범 가능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음주가 비교적 잦은 문화에서 주 5회 이상 등의 상습 음주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재범가능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음주약물로 법 위반가족문제·건강문제 경험 교차표

		비재범	재범	전체
법위반(χ^2 1=6.693, p=.010)	아니다	빈도(%) 145(53.3)	127(46.7)	272(100.0)
	그렇다	빈도(%) 36(37.9)	59(62.1)	95(100.0)
	전체	빈도(%) 181(49.3)	186(50.7)	367(100.0)
가족문제(χ^2 1=3.647, p=.056)	아니다	빈도(%) 166(51.7)	155(48.3)	321(100.0)
	그렇다	빈도(%) 16(36.4)	28(63.6)	44(100.0)
	전체	빈도(%) 182(49.9)	183(51.1)	365(100.0)
건강문제(χ^2 1=5.729, p=.017)	아니다	빈도(%) 167(51.5)	157(48.5)	324(100.0)
	그렇다	빈도(%) 13(31.7)	28(68.3)	41(100.0)
	전체	빈도(%) 180(49.3)	185(50.7)	365(100.0)

음주나 약물로 법 위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9%였고, 음주 약물로 인해 가족문제를 경험한 경우가 12.1%, 직장 문제를 경험한 경우는 8.9%, 건강문제 경험은 11.2%를 보였다. 이중 직장문제를 제외하고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경우 재범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6 사회기준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사회 기준에 대한 태도에서는 법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6.4%, 관습적 활동이나 가치에 대한 거부감 11.7%, 판결공정성이나 적

절성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1.2%,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17.1%로 조사되었다. 이 중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재범여부에 따라 유의미해, 초범자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재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판결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부정적 태도 교차표

		비재범	재범	전체
아니다	빈도(%)	132(46.8)	150(53.2)	282(100.0)
그렇다	빈도(%)	45(59.2)	31(40.8)	76(100.0)
전체	빈도(%)	177(49.4)	181(50.6)	358(100.0)

(χ^2 1=3.684, p=.055)

2.7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한 인식

감성이나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위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11.7%,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인 경향이라는 응답이 10.2%, 눈 맞춤 등의 타인관계 기술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나 재범과의 가능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표 12. 감성 인식관련

변수		빈도(%)	비재범	재범	전체
자신 행위결과 예측 못함(χ^2 1=4.939, p=.026)	아니다	빈도(%)	163(51.6)	153(48.4)	316(100.0)
	그렇다	빈도(%)	14(33.3)	28(66.7)	42(100.0)
	전체	빈도(%)	177(49.4)	181(50.6)	358(100.0)
주의 산만, 충동적 경향 교차표(χ^2 1=6.838, p=.009)	아니다	빈도(%)	163(52.9)	145(47.1)	308(100.0)
	그렇다	빈도(%)	19(33.9)	37(66.1)	56(100.0)
	전체	빈도(%)	182(50.0)	182(50.0)	364(100.0)
타인관계 기술(눈 맞춤 등) 부적절 교차표(χ^2 1=3.359, p=.067)	아니다	빈도(%)	161(51.1)	154(48.9)	315(100.0)
	그렇다	빈도(%)	16(36.4)	28(63.6)	44(100.0)
	전체	빈도(%)	177(49.3)	182(50.7)	359(100.0)

3. 분석결과의 논의

연구결과에서 유의수준 10%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종합해 재범비율이 높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사기, 폭력 등의 죄

명자가 재범비율이 높았으며, 재범그룹의 피해자는 아는 사람보다는 낯선사람, 그리고 남성이 많았다. 전과내용은 재범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입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횡수가 비재범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직업 상태로는 재학시절 징계경험, 폭력가해 경험자가 재범 그룹에서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환경에서는 재범자들이 성장과정 중 음주흡연경험에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2회 이상 경험한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가 재범 집단에 더 많았다.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음주가 많은 집단에서 재범자들이 많았으며, 재범자들의 음주약물로 인한 문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범위반, 가족문제, 건강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치관 및 태도에서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비재범자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재범자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의산만·충동적 경향, 타인과의 관계 부적절하다고 더 많이 응답해 비재범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IV. 결론

21세기의 범죄자처우이념의 중심이 된 것은 「사회복귀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내처우의 확대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라는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사회적 부적응 또는 욕구의 결핍과 관련된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단계에서의 개입과 대응은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고 범죄발생적 원인요인들을 없애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재범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효과적인 분류처우와 기법 등을 활용 치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자들의 여러 원인기제 등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개별화된 사회내처우와 사회복귀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호관찰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호관찰 직원 1인당 43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직원 1인당 171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적정 인원은 35명이라고 한다.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소년보호기관 근무 인력을 보호관찰기관으로 이체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위해 지역마다 신설 보호관찰소와 지소 등을 개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혁신 또한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향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효율적 재범관리와 사회복지를 위한 후속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정진수,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형사정책연구, 제39호, pp.102-103, 1999.
 [2] 진수명, “보호관찰과 과학적 분류처우방법”, 보호, 제12호, p.172, 2006.
 [3]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7.
 [4]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08.
 [5] 박성수, 이법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6] 이태원,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에 관한 연구”, 보호, 제9호, p.214, 1999.
 [7] A. Howard,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New Jersey : Prentice-Hall, 1994.
 [8] 박성수, 이법호,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9] 김양곤, 이수정, 이민식,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0] 권을식,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p.13, 2002.
 [11] 박성수, “약물사범 재범분석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588호, pp.164-166, 2005.
 [12]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보호국, 2006.

저 자 소 개

박 성 수(Seong-Su Park)

정희원



- 1994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경찰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보호관찰, 유비쿼터스, U-Policing, 지역사회범죄예방, 교정